

안산시성호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036
----------	------

제출년월일 : 2002.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따라 성호기념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기념관은 성호 이익 선생의 학문적 업적(실학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주민의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립함 (안 제1조).
- 나. 기념관은 매일 개관(개관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9:00, 동절기에는 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설날, 추석은 휴관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관람료는 유료로 하되(어른 1인 기준 5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은 면제함 (안 제7조, 제8조).
- 라. 기념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14조).
- 마. 시장은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념관 설치목적에 합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 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지방자치법 제16조, 제95조, 제130조, 제135조, 장애인복지법 제29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 관련사업계획서(요약) : 별 첨

□ 예산수반사항 : 건립비 3,903백만원(기획보)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2002.2.6~2.15)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성호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호 이익과 주변인물들의 학문적 업적 등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여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에 관하여 조사·연구·홍보하므로써 주민의 사회교육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호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기념관은 경기도 안산시 이동 61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성호 이익 및 주변 인물들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2. 향토사(성호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3. 기념관 소장품의 보관·보존 및 전시
4. 전시유물의 구입(공고, 심사) 및 대여·복제허가
5. 이익선생과 관련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 등의 개최
6. 이익선생과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및 사회교육
7. 기타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인력) 기념관에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포함)
2. 매주 월요일
3. 기타 시장이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①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①시장은 기념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기념관에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교사절과 그 일행
3. 6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관람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 이상자
3. 보호자가 없는 영·유아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5. 폭발물·무기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자
6. 기타 시장이 관람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기념관의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무단으로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2.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유물수집) 유물수집의 대상은 성호이의과 주변인물들의 생애 및 업적 등에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12조 (유물구입) 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도 신청 및 접수된 유물에 대하여는 유물감정평가 전문가 2인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 범위안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13조 (유물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유물감정평가 전문가 2인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 ①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호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기념관의 전시기획 및 설치, 연구활동, 유물관리, 사회교육활동 및 홍보, 시설물 건립,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의 위원)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실학과 향토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계전문가 또는 문화분야 지역인사,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17조 (수당지급)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유물의 관리 등) ①시장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유물을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물의 도난, 파손,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전시 또는 대여한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기념관의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중에 있는 유물은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관리)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기념관 개관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문화체육담당관실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문화체육담당관 권 오 달
	담당·팀장 직위·성명	관광개발팀장 김 흥 배
	담당자 성명·전화	김 민 (행정 2104)

<별표>

관람요금표(제7조관련)

구 分	금 액		비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어 른	500원	300원	19세이상 64세이하
청소년, 군인	300원	200원	· 13세이상 18세이하 · 하사이하의 군인
어린이	200원	100원	7세이상 12세이하

안산시성호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036
------------	------

제안년월일 : 2002. 4. 22.
제 안 자 : 의회 · 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기념관 비치 유물을 평가할 유물감정평가 전문가를 공인된 자로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제12조 및 제13조 중 “유물감정평가 전문가”를 “공인된 유물 감정평가 전문가”로 수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3)
- 제15조의 제목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최고 연장자”에서 “연장자”로 수정함.(안 제15조)

안산시성호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성호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하여는” 다음에 “공인된”을 삽입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증인” 다음에 “공인된”을 삽입한다.

제15조의 제목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위원 중 최고 연장자”를 “위원 중 연장자”로
한다.

조문대비표